

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운영 규정

제정 2017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경대학교 기숙사(이하 “기숙사” 라 한다) 내에 설치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기숙사 게스트하우스는 해울관 6층, 예지관 6층, 다예관 4층 일부를 사용한다.

제3조(운영관리) 기숙사 게스트하우스는 총장의 명을 받아 총장이 운영·관리한다.

제 2 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설치) ①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경대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겸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입주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3.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사용료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사용승인

제7조(입주자격) ①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외국인 교환교수 및 초빙교수
2. 국제학술교류를 위해 초빙된 자
3. 교육연구, 국제교류 및 입시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 사용하는 자

4. 기타 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8조(입주신청)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학부·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주신청서를 입주 7일 전까지 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입주기간 및 퇴거) ① 입주기간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.

1.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

2. 제7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본교를 방문하는 목적이 소멸한 경우

③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2일 전까지 촌장에게 공용물품과 관리비 납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숙소관리

제10조(관리의무 및 손해배사)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의 시설 및 생활편의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생활편의용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입주자 준수사항) 입주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취사행위

2. 시설물 변경행위

3. 음주·소란행위, 위험물반입행위, 애완동물사육행위

4. 건물 내 흡연행위

5. 타인을 유숙시키거나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

제 5 장 재 정

제12조(재정운영)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의 재정은 기숙사 재정에 편입하여 운영한다.

제13조(사용료) ① 입주자는 입주하기 전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입주 후 잔여 입주일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.

③ 국제학술교류 등 본 대학교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로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촌장이 따로 정한다.

①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